

越境環境損害에 대한 國際責任

- 環境損害防止義務를 중심으로 -

金 泰 川*

I. 問題의 提起

오늘날 환경오염은 대규모 및 광역화되고, 그 피해가 단순히 인접국만이 아니라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최근 국제적인 환경오염은 경제규모의 비약적 확대와 폭발적 인구증가를 배경으로 한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온난화 등에서 보는 것처럼 오염원의 다양성과 비특정성, 효과에 관한 과학적 불확실성 등의 특성을 가짐으로써, 종래의 환경문제와는 그 성질에 있어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기, 해양, 삼림, 생태계 등 지구환경의 보호와 보존은 인류의 공통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지구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서 총량규제적, 간접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국가의 서약이나 의무의 성질 또는 그의 이행확보를 위한 태양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¹⁾

따라서, 종래 전통적 의미에서의 국제책임에 관한 법이론만으로는 이와 같이 대규모 및 광역화되고, 또한 오염원의 다양성과 비특정성, 효과에 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가지는 국제적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할 수 없게 되었

* 慶北大 法科大學 法學部 助教授, 法學博士, 農曆士
1) 金文達 著, 國際法(서울: 法文社, 1994), pp.494-495.

다. 즉, 이와 같은 국제적 환경오염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국제책임에 관한 종래의 법이론에 수정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제적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적 국제책임의 법리²⁾에 관한 修正理論으로서,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첫째, 국제위법행위에 관하여 종래 과실책임원칙을 탈피하고 무과실책임론에 의거하여 국제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는 특히, 私人에 의해 발생된 환경오염에 대하여 국가는 「상당한 주의」의무의 缺如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둘째, 국가는 국제적 환경보호를 위한 어떠한 주의의무를 가지는가(동등적 당사자격). 그리고, 국가에 부여된 의무의 성질과 내용이 무엇인가. 국가는 지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의무가 있는가. 그 협력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한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느 범위내에서 국제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국제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라 적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침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국제책임이 인정되는가. 넷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국가는 어느 정도의 침해를 입은 경우에 비로소 국제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는가(수동적 당사자격). 피해자는 일정한 한도내에서의 환경오염을 受忍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受忍限度論) 하는 등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 중에서 첫째 문제는 이미 다른 기회에 論議한 바 있고,³⁾ 이 글에서는 둘째 문제인 환경손해방지의무, 즉 국가에게 부여된 국제환경보호의무의 성질과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한정하여 주로 국제입법, 국제판례 등을 점검함으로써 위와 같은 修正理論이 현재 어느 정도의 국제법적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전통적 국제책임이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국제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① 국제법상 의무위반이 발생 하였을 것, ② 국제위법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수 있을 것, ③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④ 의무위반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등을 들고 있다.

3) 첫째 문제인 國際違法行為責任의 成立要件에 관하여는, 挑稿, “越境環境損害에 대한 國際責任(1) - 國際違法行為責任의 成立 -,” 法學論叢(慶北大學校 法學研究所), 第9輯, 1993, pp.83-114에서 논의한 바 있다.

II. 環境損害防止義務의 意義

1. 전통적 의미에 있어서 환경손해방지의무

환경오염에 대한 전통적 국제책임론에 의하면, 자국영역내에서의 경제활동, 자원개발 등 주권적 권리를 전제로 하면서, 그러한 활동이 타국의 권리(영토보전)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領域使用의 管理責任'의 개념⁴⁾을 사용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국제책임을 인정하고자 한 것이었다.⁵⁾ 여기서의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어디까지나 국가간의 '상호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오염방지를 위한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 즉 '결과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실시조치의 방법과 수단은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⁶⁾ 또한, 여기서의 국가의 의무는 일반적 내지 추상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즉, 국제적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국 혹은 그 국민의 영역, 재산,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여 타국의 영역주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국제법상 자국영역내의 활동에 의하여 타국에 환경손해(environmental damage)⁷⁾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무를 '환경손해방지의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무는 20세기 초경부터 조약,⁸⁾ 국제관습법,

4)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은 원래 국제법의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법의침해(예컨대, 영토보전이나 영토의 불가침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영역이 사용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국제적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국 혹은 그 국민의 영역, 재산,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타국의 영역주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추적용하게 되었다(拙稿, 앞의 글, pp.94-104).

5) Trail Smelter Case, 미국-캐나다중재법원, 미국對캐나다, 1941, 3 RIAA 1911; 35 AJIL 716: 9 ILR 317; 金文達外1, 앞의 책, p.494.

6) 金文達, 外1, 앞의 책, pp.493-494.

7) 여기서 環境損害과 함은 환경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유해한 효과 가운데, 국제법상의 보호법익을 위반하여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국제법상 특히 규제가 필요한 환경손해로는, 예를 들어, ① 환경 내의 물질이 인간활동을 매개로 하여 생명유지체계에 부여된 손해(대기와 수질오염, 오존층의 파괴, 또는 유해한 폐기물, 화학제품, 위험기술의 유통이동에 의한 것)라든가, ② 인간활동에 유익한 천연자원 기타 재물의 손괴(사막화, 토양침식, 삼림감소, 기념물과 건조물의 손상 등), 그리고, ③ 인간의 건강과 생활항상에 기초하여 기준을 초월한 자연질서의 보존을 해하는 것(생물다양성의 보전, 우주공간 및 천체의 환경 또는 고래 기타 해양포유동물이나 절멸의 위험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해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拙稿, 앞의 글, p.94).

8) 환경손해방지의무를 규정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는 1909년 캐나다와 미국간에 체결된 국경수역조약(the Boundary Waters Treaty)을 들 수 있다. 위 조약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여기서 규정된 국경

- 9) 국제판례¹⁰⁾ 혹은 국제입법과 국가실행¹¹⁾을 통하여 국제환경법상 실질적인(substantive or material) 규칙 내지 원칙으로 인정되어 왔다.

2.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환경손해방지의무

위에서 검토한 전통적 국제책임론에 있어서의 환경손해방지의무는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원래 2국간 혹은 근접하는 국가들간에 발생하는 전통적 의미의 환경손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환경손해방지의무가 오염원의 다양성과 비특정성, 효과에 관한 과학적 불

수역 및 국경을 통과하여 흐르는 수역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당사국에 의해 다른 당사국의 건강과 재산에 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오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국제조약으로는 1982년의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2항이 있다.

- 9) A.Kiss et al.,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London: Graham & Trotman Limited, 1991), p.130; Marc Pallemarts, "International Legal Aspects of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Hagu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1, 1988, p.205; G.Handl, "State Liability for Accidental Transnational Environmental Damage by Private Persons", 74 AJIL(1980), p.525, 528; J.G.Lammers, "First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Legal Aspects of Long-Distance Air Pollution", in ILA, Report of the Sixty-First Conference, Paris, 1984, p.391; P.M.Dupuy, "Soft Law and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Environment," 12 Michigan J.I.L.(1991), p.355; G.Palmer, "New Ways to Mak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86 AJIL(1992), p.267; G.Dahm, J.Delbrück & R.Wolfrum, Völkerrecht, Vol.I/1, 1989, 446f; R.Wolfrum, "Purpos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33GYIL(1990), p.310; 括弧, 앞의 글, p.100.
- 10) Trail Smelter Case(Arbitration, The United States v. Canada, 1941, 3 R.I.A.A. 1911: 35 AJIL 716; 9 ILR 317). Lake Lanoux Arbitration(Arbitral Tribunal, France v. Spain, 1957, 12 RIAA 281: YBILC, Vol.II(Part Two), pp.194-199, U.N.Doc. A/5409, paras. 1055-1068: 53 AJIL 156-171; ILR(1957), pp.101-142). Nuclear Tests Case(ICJ Reports, 1973, pp.99-100, pp.135-136).
- 11) 일반적인 환경손해방지의무에 관한 국제입법과 국가실행으로는, ① 1948년의 유엔 국제법연구(U.N.Doc. A/CN.4/Rev.1 (U.N. Pub. V.1(1)), p.34), ② 1972년의 스톡홀름 선언(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Stockholm, June 5, 1972), ③ 1974년의 월경오염에 관한 OECD원칙(OECD, Principles Concerning Transfrontier Pollution, C(74)224 of November 14, 1974), ④ 1978년의 UNEP 공유천연자원에 관한 행동원칙(Decision 6/16 of the Governing Council of UNEP, Principles of Conduct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for the Guideline of States in the Conservation and Harmonious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Shared By Two or More States, May 19, 1978), ⑤ 1987년의 미국 외교관계법 제3차 Restatement 제601조(Section 601 of the United States Restatement of Foreign Relations Law), ⑥ 1985년의 UNEP 육지환경오염에 대한 몬트리올 지침(Decision 13/18/11 of the Governing Council of UNEP, Montreal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gainst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May 24, 1985), ⑦ 1989년의 환경과 건강에 관한 유럽현장 제5조, ⑧ 1992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 제2, ⑨ 셰르노빌 원자력 사고에 대한 각국의 태도 등을 들 수 있다(括弧, 앞의 글, pp.100-104).

확실성 등의 특성을 가지는 현대적인 환경손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기여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¹²⁾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에 있어서, 국가의 의무의 성질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컨대, 산성비 등 광역대기오염의 방지나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대하여는 국가간의 상호적인 의무가 아니라, 국제사회전체 혹은 인류공동체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인 의무를 인정할 필요성이 요청되었다.¹³⁾ 그리고, 대규모, 광역적 환경오염은 이미 국가 상호간의 의무의 범위를 초월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리하여 국가에 부여된 의무의 성질도, '실시, 방법의 의무' 내지 '특정사태발생의 방지의무' 등과 같이 각국의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좁히게 되었다.¹⁴⁾

이러한 실시, 방법의 의무 내지 특정사태발생의 방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국가들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즉, 국가를 초월한 자연자원의 이용이나 초국가적 환경손해의 방지 혹은 경감에 관하여 국가들간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국가들간의 협력이 요청되는 것이다.¹⁵⁾ 관련국가들간의 이러한 협력은 월경환경손해로 인한 국가들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그러한 분쟁의 해결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협력의 과정을 위한 본질적인 조건은 각국이 타국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善隣(good faith)의 원칙에 의하여 추구되어야 한다.¹⁶⁾ 선린의 원칙에 기초한 이러한 일반적인 협력의 의무(a general duty of States to cooperate in good faith)는 수많은 국제조약과¹⁷⁾ 국제기구

12) 摘稿, 앞의 글, p.104.

13) 1979년의 장거리월경대기오염에 관한 조약 제2조, 1982년의 유엔해양법조약 제192조, 194조 등.

14) 金文達 外1, 앞의 책, p.495.

15) J.G.Lammers, "The Present State of Research Carried Out by the English-Speaking Section of the Centre for Studies and Research," in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1985 Transfrontier Pollution and International Law, 1986, p.103.

16) Ibid., pp.103-104.

17) 협력의 의무를 인정한 다자조약과 이자조약의 예는 다음과 같다: 1963 Bern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hine against Pollution(amended in 1976); 1964 Agreement concerning the Use of Water Resources in Frontier Waters

의 결의¹⁸⁾를 통하여 하나의 중요한 국제법규범으로 인정되어 왔다. 1972년 스툴홀름선언 원칙 제24는,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관한 국제문제는, 국가의大小를 불문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협조적 정신을 가지고 다루지 않으면 아니된다. 多者間 및 二者間 협정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한 협력은, 모든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효과적으로 규제, 예방, 감경 및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규정하여 환경오염방지 를 위한 국가의 협력의무를 인정하였다. 또한 국제판례에서도 이러한 국가 간의 협력의무가 인정된 바 있다. 즉, The Lake Lanoux사건에서 중재법 정은 국제수로의 이용에 있어서 국가간의 협력의무를 인정하였다: “사실상 오늘날 국가는 국제하천의 산업적 이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상호간의 양보를 통한 그 문제의 해결의 필요성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다.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매우 포괄적인 기초위에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국제관행은 국가들이

concluded between Poland and USSR: 1968 African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Art. 16); 1971 Act of Santiago concerning Hydrologic Basins concluded between Argentina and Chile(Arts. 3-8); 1974 Paris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1974 Helsinki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Baltic Sea Area; 1976 Barcelona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the Mediterranean Sea; 1978 Great Lakes Water Quality Agreement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Arts. 7-10); 1979 ECE Convention on Long 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1982 United Nations Law of the Sea Convention(Arts. 63, 66-67).

- 18) 협력의 의무를 인정한 정부간 혹은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결의, 선언 혹은 지침의 예는 다음과 같다:
 Principle 24 of the 1972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Recommendations 51 and 72 adopted at the 1972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GA resolution No.2995(Cooperation between States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1972); UNGA resolution No.3129(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Concerning Natural Resources Shared by Two or More States, 1973); 1974 OECD Council Recommendation C (74) concerning Transfrontier Pollution: Chapter 5 on Environment of the 1975 Final Act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Recommendation 90 of the Action Plan adopted by the 1977 United Nations Mar del Plata Water Conference; 1978 UNEP Principles of Conduct on Shared Natural Resources: 1979 Geneva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1982 Nairobi Declaration(UNEP); UNGA resolution No.228(XLIV)(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9); UNGA resolution No.229(XLIV)(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1989); Principle 7 of the 1991 Earth Charter, Principles on General Rights and Obligations: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

그러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의사전달과 계약을 善隣(good faith)에 의하여 수락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사전달과 계약은, 보다 큰 이익과 상호주의적 善意(good will)에 의하여, 국가들에게 협정체결을 위한 가장 훌륭한 조건들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¹⁹⁾

이와 같이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환경손해방지의무는 환경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국가간의 협력의무의 형태를 가진 채, 일반국제법상의 법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협력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한 상태에 있다.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환경손해방지의무 내지 국가간의 협력의무의 위반 내지 불이행만으로 과연 국제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따라서, 국제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환경손해방지의무 내지 국가간의 협력의무는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비록 그러한 의무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 구체화된 의무가 국제법상의 국가의 의무로 인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환경손해방지의무 내지 국가간의 협력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며, 그러한 구체적인 의무가, 현재 과연 어느 정도로 일반국제법원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향후 가지게 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I. 環境損害防止義務의 具體的 内容

국제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야 하는 것인가를 살펴본다. 환경손해방지의무 혹은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협력의 의무를 유형화하면 일반적으로 대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의무로 분류할 수 있다. 즉, ① 環境影響評價의 의무(duty to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② 通告의 의무(duty

19) 12 UNRIAA, pp.285-317; 24 ILR(1957), pp.105-142; 53 AJIL(1959), pp.156-171.

to inform), ③ 協議의 의무(duty to consult), ④ 事前承認을 받을 의무(duty to secure prior approval), ⑤ 援助의 의무(duty to assist) 등을 들 수 있다.²⁰⁾

1. 環境影響評價의 의무

국가는 환경에 역효과를 미치게 될지 모르는 어떠한 중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를 먼저 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²¹⁾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의무²²⁾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수립이 다른 국가의 환경의 자연자원에 실질적인 간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은데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는 국가는, 그러한 계획을 수행하거나 허용하기 이전에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러한 의무는 당해 국가로 하여금 그러한 계획수립과 실행의 효과가 관련된 다른 국가에게 사전통고하거나 사전정보제공을 하여야 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²³⁾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는 최근 많은 국제조약에서 인정되고 있다.

20) A.L.Springer,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Pollution* (Westport/London: Quorum Books, 1983), pp.144-145; A.Kiss & Dinah Shelton, op. cit., pp.129-144; D.H.Ott, *Public International Law in the Modern World* (London: Pitman Publishing, 1987), p.293. 한편, 이러한 의무들 이외에도 자료수집(collection of data), 과학적 혹은 기술적 연구 (scientific or technical), 환경규범의 설정(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norms), 제도적인 협력(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환경적 통제(environmental control), 사실발견 (fact-finding) 및 환경위험관리(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등도 일반적인 협력의무의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까지도 확립된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라는 형태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국제책임의 대상이 되는 환경손해방지의무 혹은 협력의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즉, 이러한 형태의 협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제의무 혹은 국제법위반이라 하여 국제책임을 추궁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예컨대, *Basel협약*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의 원칙은 단지 틀거조약(framework convention) 내지 soft law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규정의 위반 만으로는 국제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이다(拙稿, 앞의 논문, pp.118-119).

21) D.H.Otto, op. cit., p.293; A.L.Springer, op. cit., p.145.

22)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는 뒤에서 보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사전통고 내지 정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된다(A.Kiss, op. cit., p.147).

23) J.G.Lammers, op. cit., p.113.

24)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82년의 해양법협약 제20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들은 그들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의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 오염 또는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실행가능한 한 해양환경에 대한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제205조(보고서의 발행)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이러한 평가의 결과보고를 전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엔총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국제기구는 그 결의 혹은 지침(guideline)를 통하여,²⁵⁾ 환경영향평가의무를 인정하였다. 예컨대, 1972년 스톡홀름 선언 원칙 제17은, “환경의 질을 높히기 위하여 각국은 그의 환경자원을 계획, 관리 혹은 통제하는 임무를 적절한 국가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²⁶⁾고 하였고, 1992년 리우선언도 원칙 제17에서, “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관할정부당국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가 국가적 제도로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 및 평가의무는 The Lake Lanoux 중재

24) 환경영향평가의무를 인정한 다자조약과 이자조약의 예는 다음과 같다: 1983 Agreement concluded betwee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on Cooperation for the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in the Border Area (Arts. 6,7); 1985 ASEAN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Arts. 19②③, 20③④); 1978 Kuwait Regional Convention (Art. 11); 1981 Abidjan Convention for Cooperation in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West and Central African Region(Art. 13); 1982 Jeddah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the Regional Environment of the Red Sea and Gulf of Aden(Art. 11, Chap. I of the Action Plan); 1983 Cartagena de Indias Convention for the Wider Caribbean Region(Art. 12).

25) 환경영향평가의무를 인정한 정부간 혹은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결의, 선언 혹은 지침의 예는 다음과 같다: 1982 UNGA resolution No.37/7 on the World Charter of Nature (Arts. 11, 16); 1984 ECA Council of Ministers Resolu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Africa (Para. 2①); 1974 OECD Governments Declaration on Environmental Policy (Para. 9); 1974 OECD Council Recommendation C (74) 216 on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Significant Public and Private Projects (Para. 1①); 1979 OECD Council Recommendation C (79) 116 on Assessment of Projects with Significant Impact on the Environment (Para. 1①,2,③); 1985 EEC Council Directive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the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Art. 7); Principle 4 of the 1978 UNEP Draft Principle of Conduct on Shared Natural Resources; 1979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Athens Resolution on Pollution of Rivers and Lakes and International Law (Art. 7⑥); 1982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Montre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Transfrontier Pollution (Art. 5②).

26) 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Stockholm, June 5, 1972, in: H.Hohman (ed.), op. cit., p.25.

판결에서 일반국제법상으로 인정되는 의무임이 확인된 바 있다. 즉, 위 종재판결에 의하면, “상류국은 --- 문제된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자신의 목적추구와 양립할 수 있는 모든 만족을 하류국들에게 부여하고자 노력하며, 그리고 다른 연안국(하류국들)의 이해관계와 자신의 이해관계를 진정으로 조정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²⁷⁾고 하였다.

이러한 의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A.Utton은 ‘善隣의 一般原則’(general principle of neighborliness)에서 그러한 의무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득력있게 주장하였고²⁸⁾, 또한 F.Kirgis는 핵실험과 해양 투기와 같은 활동에 관한 미국의 관행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적어도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한 구성원으로서의 미국은 그러한 활동의 越境的影響을 평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²⁹⁾

그러나, 이러한 관리 혹은 평가의 의무에 관한 많은 국제입법 등이 쌓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evaluation criteria)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정한 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평가의무의 정확한 의미내용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³⁰⁾ A.L.Springer는, 평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 국제환경영향평가서(international environmental-impact statements)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³¹⁾ 즉, 환경자원을 관리, 계획 혹은 통제하고자 하는 당해 국가는 국제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일정한 국제기구(예를 들어, UNEP)와 환경에 역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표준화된 평

27) Lake Lanoux Arbitration(1957), in: "Lake Lanoux Case," 53 AJIL(1959), p.169; A.L.Springer, op. cit., p.145.

28) A.E.Utt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Consultation Mechanisms," 12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1973), pp.58-59; A.L.Springer, op. cit., p.145.

29) F.L.Kirgis, "Technological Challenge to the Shared Environment: United States Practice," 66 AJIL(1972), p.318.

30) A.L.Springer, op. cit., p.146; 朴基甲, “국제판례를 통하여 본 국제하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한림법학 FORUM, 제2권, 1992, p.67 (“--- 위와 같은 연안국간 상호의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한 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31) A.L.Springer, op. cit., p.146.

가(the standardized evaluation)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것이고, 또한 그 평가서 자체는 관련 당사국들간의 협상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81년 UNEP는,³²⁾ 산하기관인 환경법에 관한 전문가단체(Working Group of Experts)의 작업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일용의 평가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³³⁾ 그 평가기준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그러한 효과가 어디에서 발생하든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효과들에 대하여 다루어야만 한다. 그 평가는,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다음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그 활동이 실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지리적인 경계에 관한 記述; ② 그 지역에 대한 당초의 생태적 상태에 관한 記述; ③ 계획된 활동의 성질, 목표 및 범위에 관한 표시; ④ 사용될 방법, 시설 및 기타 수단에 관한 記述; ⑤ 동물군, 식물군 및 생태적 균형을 포함하여 환경에 관한 활동의 예전 가능한 직접 및 간접적인 장기 및 단기효과들에 관한 記述; ⑥ 그 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손해의 위험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조치들, 그리고 부가하여 그러한 조치들의 가능한 선택들을 설명하는 陳述; ⑦ 제안된 활동의 과정중 및 종료후에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오염 및 다른 역효과로부터 환경보호를 위하여 취해질 수 있는 조치들에 관한 표시; ⑧ 통상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가의 개요"³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기준은 국가를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국제법규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약 등에 기초하여 환경영향평가의무를 가지는 국가가 위와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국제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평가기준은 실제 국가가 환경영향평가의무를 이행하는

32) Conclusion No.8, Chapter C of the 1981 UNEP Conclusions of the Study on the Legal Aspects concerning the Environment related to Offshore Mining and Drilling within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33) 이 평가기준은 1983년 유엔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확인되었다(UNGA resolution No. 37/217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34) J.G.Lammers, op. cit., pp.114-115.

데 있어서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³⁵⁾

2. 通告의 의무 혹은 事前情報提供의 의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계획의 실시 혹은 제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당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이웃 국가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事前에 통고하거나(통고의무), 혹은 현실적인 환경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국가들에게 경고하여야 할(경고의무) 국제법상 의무를 지는가. 이러한 통고의무 혹은 경고의무는 바로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이러한 의무는 다른 관련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관련되고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그 요청국에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정보제공의무). 그 정보는 이미 실질적으로 발생된 특정의 유통환경손해의 성질 및 정도, 혹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정보를 통하여 국가는 협력이나 다른 분쟁해결의 방법을 통하여 그러한 환경손해를 해결(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정보제공으로 말미암아 국가들은 천연자원의 상황(조건)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제공의 의무는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초국경적인 천연자원(예, 국제하천)에 대한 합리적이고 형평적인 이용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³⁶⁾ 이와 같은 통고의무는 그 위험이 국가관할권 밖에서 구체화되고 전혀 오염피해국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도 있다.³⁷⁾ 예를 들어, 해양법협약 제189조에 의하면, “일국이 해양환경이 오염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오염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국가는 그러한 손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

35) J.G.Lammers, op. cit., p.114.

36) J.G.Lammers, op. cit., pp.106-107.

37) A.L.Springer, op. cit., p.143.

각되는 타국 및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조약 제5조는, “본조약의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또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조성할 수 있는 모든 현상에 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³⁸⁾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통고 혹은 경고의 의무를 가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설상으로는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누어진다. Springer는 이러한 통고의 의무가 국제법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의 여부는 분명치 아니하다고 하면서 The Lake Lanoux 중재판결의 판시내용을 들고 있다.³⁹⁾ 즉, 비록 위 중재법원은 프랑스가 스페인에게 계획된 개발을 ‘통지할 것이 요청되는 것’(be required to give notice)이라고 판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의무가 Bayonne조약(스페인과 프랑스간의 The Lake Lanoux의 보존, 관리에 관한 조약)의 체계를 넘어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이다.⁴⁰⁾ 또한, A.Kiss도 1976년경 「자연 및 자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국제연합」(IUCN)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통고의무를 당시 현존하는 실정국제법규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그러한 의무 혹은 국가 간의 협력의무는 도덕적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⁴¹⁾ 그러나, 많은 국제법학자들은 이러한 통고의무를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수용하고 있다. 즉, Utton은 ‘최소한의 합리성’(minimum reasonableness)원칙에서 이러한 통고의무를導出하였으며,⁴²⁾ Charles Bourne은 통고의무가 ‘형평적 사용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itable utilization)의 핵심부분을 이루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⁴³⁾ 위에서 본 것처럼 1976년경 당시에는

38) UNGA., res. 34/68, December 5, 1979, "United Nations Agreement conc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the Other Celestial Bodies," in 18 ILM (1979), p.1436.

39) A.L.Springer, op. cit., p.146.

40) A.L.Springer, op. cit., p.146.

41) A.Kiss, "Survey of Curr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ICUN Environmental Policy and Law paper, No.10 (Morges, Switzerland: ICUN, 1976), p.31; A.L.Springer, op. cit., p.147.

42) A.E.Utton, op. cit., p.64; A.L.Springer, op. cit., p.146.

43) C.B.Bourne, "International Law and Pollution of International Rivers and Lakes," 6

실정국제법규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한 A.Kiss는, 그후 견해를 바꾸어 「긴급상황의 통고의무」(a duty to notify of emergency situations)가 일반국제법의 규칙으로 형성되어 왔고, 「환경적 위기의 통고의무」(duty to notify of environmental crises)가 일반적인 형식을 가지고 관습법적으로 발전하여 왔다고 하였다.⁴⁴⁾

한편, 통고의무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기구의 결의 및 국가실행에 있어서는 그 동안 많은 변천이 있었다. 20세기 초경부터 수많은 국제환경관련 조약은 사전통고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여 오고 있다.⁴⁵⁾ 그리고, 위와 같은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실행에 있어서 사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Review(1971), p.122; A.L.Springer, op. cit., p.146.
44) A.Kiss et al., op. cit., pp.132-133.

45) 통고의무를 인정한 다자조약과 이자조약의 예는 다음과 같다: 1909 Boundary Waters Treaty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Art. 3,4); 1954 Convention concerning Water Economy Questions relating to Drava concluded between Austria and Yugoslavia(Art. 1 of Annex B); 1955 Agreement between Romania and Yugoslavia on Questions of Water Control, Water Control System and Frontier Waters(Art. 2); 1960 Frontier Treaty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Germany and the Netherlands(Art. 60①); 1960 Indus Water Treaty between India and Pakistan(Art. 6, 7②); 1960 Steckbor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Lake Constance against Pollution(Art. 1); 1964 Niamey Agreement concerning the River Niger Commission and the Navigation and Transport on the River Niger(Art. 12); 1964 Agreement between Finland and the USSR concerning Frontier Watercourses(Art. 4③); 1971 Act of Santiago between Argentina and Chile concerning Hydrologic Basins(Art. 5, 8); 1971 Declaration of Asuncion on the Use of International Rivers adopted by the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of the countries of the La Plata River Basin(i.e. Argentina, Bolivia, Brazil, Paraguay and Uruguay)(Arts. 3-4); 1971 Buenos Aires Declaration between Argentina and Uruguay on Water Resources(Art. 3); 1974 Agreement concerning Cooperation in Water Economy Questions in Frontier Rivers concluded betwee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d Czechoslovakia(Art. 9); 1974 Nordic Environmental Protection Convention; 1978 Agreement on Great Lakes Water Quality concluded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Art. 9④); 1979 EC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Art. 3,4,8,9); 1978 Kuwait Regional Convention for Coope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Pollution(Art. 10); 1980 Athens Protocol to the 1976 Barcelona Convention for the Mediterranean Sea against Pollution(Art. 13); 1980 Memorandum of Intent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Transboundary Air Pollution; 1980 Agreement between Norway and Finland concerning a Norwegian-Finnish Commission for Frontier Watercourses(Art. 1); 1982 United Nations Law of the Sea Convention (Art. 200); 1983 Cartagena de Inicia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Wider Caribbean Region; 1985 ASEAN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Arts. 19⑤, 20⑥); 1985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Annex II); 1988 Convention on the Regulation of Antarctic Mineral Resources Activities(Wellington Convention).

실상 통고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⁴⁶⁾ 나아가, 1972년 스톡홀름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다. 스톡홀름선언초안 원칙 제20은, 당초 '중대한 역효과의 위험을 회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정보'(relevant information)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규정은 誤用될 수 있으며 저개발국의 개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本宣言 챕터시에는 위와 같은 통고의무를 배제하고 말았다.⁴⁷⁾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유엔총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는 그 결의를 통하여,⁴⁸⁾ 환경문제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통고와 정보교환의 절차의 필요성을 점차 인정하여 갔다. 즉, 1972년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된 '환경분야에서의 국가간의 협력'에 의하면, "환경분야에 있어서 국가간의 협력은, --- 인접한 지역의 환경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할 목적으로, 만약 국가관할권내에서 국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계획(work)에 관한 기술적인 자료가 공식적 및 공공적으로 인식되어진다면, 그러한 협력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⁴⁹⁾ 그리고, 1974년 유엔총회에서 결의로써 채택된 '국가의 경제적

46) 통고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한 구체적인 국가실행에 관해서 Rauschning, "Report on the ILA Draf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Transfrontier Pollution," in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60th Conf. Rep., 1982, pp.172-173 참조.

47) L.B.Sohn, "The Stockholm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14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1973), pp.406-502; A.L.Springer, op. cit., p.147.

48) 통고의무를 인정한 정부간 혹은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결의, 선언 혹은 지침의 예는 다음과 같다: Principles 5, 6 and 7 of the 1978 UNEP Draft Principles of Conduct on Shared Natural Resources(the Governing Body of the UNEP); 1974 OECD Council Recommendation C(74) 224 concerning Transfrontier Pollution (Annex, Title E, G)(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OECD); UNGA resolution No.3129(XXVIII, 1973) ; UNGA resolution No.3281(XXXI, 1974)(Art. 3 of the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1977 OECD Council Recommendation C(77) 28(Final) concerning Implementation of a Regime of Equal Right of Access and Non-Discrimination in relation to Transfrontier Pollution (Annex, Title C 8@)(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OECD); Art. 7@ of the 1979 Athens resolution on Pollution of Rivers and Lakes and International Law(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Art. 29 of the 1966 Helsinki Rules on the Uses of the Waters of the International Rivers(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Art. 7@ of the 1980 Belgrade Articles on the Regulation of the Flow of Water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Art. 5@, ⑥ of the 1982 Montreal Rules on Water Pollution in an International Drainage Basin(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Art. 5@ of the 1982 Montre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Transfrontier Pollution(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49) UNGA Res. 2995(XXVII), Co-operation between States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권리와 의무 현장' 제3조는, "2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천연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도 타국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고 위 자원의 적절한 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情報 및 事前協議制度에 기하여 협력을 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1992년 리우선언은 원칙 제18에서, "각국은 돌발적인 유해한 효과를 다른 국가들의 환경에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연재해 혹은 기타의 긴급상황을 그러한 국가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원칙 제19는, "모든 국가는 국경을 초월하여 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활동에 대하여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게 事前에 適時에 통고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하여 사전통고와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월경환경손해에 관한 국내법원의 판결 중에는, 국제법상의 통고의무 혹은 사전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한 것도 있다. 즉, 라인강 염화물오염 사건(1979~1988년)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의 판결과,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방사능누출 사건(1986년)과 관련한 第2農園污染事件에서 Bonn 地區法院의 판결이 바로 그것이다. 앞의 사건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고, 문제를 국제공법과 국가간 조약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Bonn조약의 염화물배출기준에 관한 항변에 대하여 조약은 체약국을 구속하는 것에 불과하고 개개의 시민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으나,⁵⁰⁾ "어떤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야기하는 위험한 상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경고를 함으로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수단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행위는 불법행위다"고 판시하여, 국제법상 인정되는 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환경손해에 관한 통고 내지 사전정보제공의무를 가진다고 하였다.⁵¹⁾

December 15, 1972 in: H.Hohmann (ed.), op. cit., Vol.1, p.53.

50) 네덜란드 대법원은 越境污染(transboundary pollution)의 문제는 국제법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51) 이 사건은 결국 1988년 피고가 원고들에게 11,250,000 프랑스 프랑(약 200만 \$)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종결되었다.

또한, 後者의 사건에서⁵²⁾ 구서독 Bonn地區法院(Amtsgericht)은 피고에 대한 청구의 법적 기초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자력사고에 의한 월경환경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자국영역내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는 국제관습법상 早期通報할義務를 가지며 그 의무위반은 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확실히 국제법상 정보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는 존재하며, 이러한 의무의 불이행에는 배상의무가 뒤따른다. 이러한 의무는 국제법상 주체간에는 직접 적용되는 국제법상 의무로서 존재한다. 說明(clarification), 情報提供 (information), 警告(warning)라는義務의 不履行은 국제법상 위법상태를 야기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국가 자신이 그래서 그 자신의 권리가 스스로의 國家保全(national integrity)에 대한 손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아니라 국가만이 관련된 배상청구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상에서 통고의무에 관한 국제입법 및 국가실행, 학설과 판례 등을 검토하였다. 이것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국제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가진 국가들은 우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타방에게 정보를 제공할 일반국제법상의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통고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느 국가에게 통고하여야 하는가 통고의무는 다른 국가의 요청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인가 통고의무는 구체적으로 언제 발생하는가(계획의 단계, 실험의 단계 혹은 계획의 실제적 실행의 단계) 제공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은 무엇인가 등의 여러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위에서 검토한 일련의 국제입법과 국가실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다면, 첫째, 통고의무 혹은 정보제공의 의무는 ‘모든 관련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접근가능한

52) Garden Contamination Case [2] (Amtsgericht of Bonn, September 29, 1987, Case No. 9C 362/86; Landgericht of Bonn, December 14, 1987, Case No. 5T 184/87), 80 ILR(1989), pp.378-388. 이 사건은 구서독 국내에서 피해를 입은 農園主가 Bonn地區法院에 구소권을 피고로 하여 Bonn駐在 구소련 대사를 대표자로 하여 제소한 소송이다. Bonn地區法院은 위 소송이 토지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피고에 대한 청구의 법적 기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그후 항소심인 Bonn地方法院(Landgericht)도 제1심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정보'(all relevant and reasonably available data)에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³⁾ 이것은 바로 정보를 요구하는 국가는 정보를 받는데 있어서 이익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청된 정보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어떠한 의무도 가지지 아니한다.⁵⁴⁾ 그러나, 이용가능한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요청하는 국가가 그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일반적인 협력의 의무에 기초하여 그러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국가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⁵⁵⁾ 둘째, 대부분의 국제조약은 환경손해의 위험이 '중대한 손해'(significant harm)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⁵⁶⁾ 통고의무를 인정하고 있다.⁵⁷⁾ 왜냐하면, 중대한 손해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소한 손해의 경우에까지 모두 통고의무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곧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주권존중 및 국제문제불간섭의무와 충돌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어디까지가 중대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매우 곤란하고, 이것은 가해국과 피해국간의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셋째, 통고 혹은 정보제공은 원칙적으로 계획된 활동을 수행하기 이전에 해제져야 한다는 것, 즉 사전통고 혹은 사전정보제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⁵⁸⁾ 왜냐하면, 잠재적 피해국은 사전에 통고 혹은 정보제공을 받음으로써 가해국의 계획된 활동에 대해 대응하거나 적어도 잠재적 환경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조약에서는 '事前'(prior to) 혹은 '지체없이'(timeliness)라고 명문으로 규

53) J.G.Lammers, op. cit., p.109.

54) Art. 3(b) of the 1971 Declaration of Asuncion on the Use of International Rivers.

55) Art. 7(1)(a) of the 1960 Indus Waters Treaty.

56) 예외적으로, 아무리 사소한 환경손해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통고의무를 인정한 예도 있다. 즉, 달조약이 바로 그것이다(1979 UNGA resolution 34/68, United Nations Agreement concerning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위 조약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서 자국이 취한 조치를 통보하고, 또한 실행가능한 최대한도까지 달에 있어서 자국이 행할 모든 방사성물질의 배치 및 그 배치목적에 대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57) A.L.Springer, op. cit., p.147.

58) Ibid. p.147.

정하기도 한다. 넷째, 제공되어야 할 정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초창기의 조약에서는 막연히 '필요한 정보'(necessary information)라고만 규정하여 매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⁵⁹⁾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에게 그 판단을 맡기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의 조약에서는⁶⁰⁾ 조약의 체계내에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과 종류를 규정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⁶¹⁾ 예컨대, 남극의 광물자원개발의 규제에 관한 협약(1988년)에 의하면, 남극의 광물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는 사전정보제공의 원칙에 따라 그 개발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개발하는 자의 기술적 능력, 우발적인 사태발생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위 협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위원회, 규제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사전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²⁾ 또한 오존충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1985년)도 그 부속서II(정보교환)에서 교환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사업적, 상업적, 법적 정보로 나누고(제1항), 나아가 과학적 정보(제3항), 기술적 정보(제4항), 사회경제적 및 상업적 정보(제5항), 법적 정보(제6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국제관행에 의하면, 일반적인 정보제공은 그것이 잠재적 손해의 평가를 위한 정보수령국의 필요에 적절한 것이라면 충분하다고 한다. 정보제공의 대상은 통상적으로 정보제공국의 사업적, 상업적 혹은 안보적 이익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⁶³⁾ 예컨대, 오존충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체약국은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사업적, 상업적 및 법적 정보를 교환할 것을 규정함과 아울러(부속서II 제1항), (이 부속서상의)

59) Art. 15 of the 1929 Convention on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Law of Watercourses between Norway and Sweden.

60) Art. 17③ of the 1963 Treaty concerning in the Connexion between The Sheldt and the Rhine :Netherlands and Belgium.

61) A.L.Springer, op. cit., p.148.

62) Convention on the Regulation of Antarctic Mineral Resources Activities, 2 June 1988, 27 ILM (1988), p.859. For a comment, see Francioni, "Resource Sharing in Antarctic: For Whose Benefit ?" 1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1990), pp.258-259.

63) F.Francioni,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he Procedural Dimension,": in W.Lang et al.(ed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Law (London/Dordrecht/Boston: Graham & Trotman/Martinus Nijhoff, 1991), p.209.

협력은 특히, 무역상의 비밀, 비밀적 및 재산상의 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가법, 규제 및 관행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부속서II 제1항).

그런데, 통고 혹은 정보제공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곧 바로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국제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가. 私見에 의한다면, 적어도 방사능누출과 같은 심각한 원자력발전소 환경오염사고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환경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사고발생사실을 통고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일반국제법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즉 통고의무 혹은 정보제공의무위반 만으로 바로 국제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조약상 통고의무를 인정한 대표적인 다자조약으로서, 방사능누출사고와 관련한 '핵사고의 早期通告에 관한條約'이 있다. 위 조약은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사고를 계기로 하여, IAEA총회가 핵사고의 방지와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원래 그 영역 내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하여 즉시 통고해야 한다는 관습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법상의 규범이 위 조약의 채택으로 성문화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기통고를 행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시간적 제한·상대방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오염원국의 재량의 여지를 좁히고, 원자력사고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환경오염손해를 방지하는 국가의 의무를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위 조약에 의하면 통고해야 할 사고에 관한 결정은 오염원국의 판단에 (in the judgement of the State) 맡기고 있다(제1조). 그러나, 위 조약은 또한 통고해야 할 정보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염원국의 態意가 발동할 여지는 매우 적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위 조약 제2조에 의하면,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약국은, (a) 직접 또는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하여 제1조에서 정한 물리적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 및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하여, 원자력사고의 발생사실, 그 종류, 발생시각

및 적당한 경우에는 그 정확한 장소를 즉시(forthwith) 통보한다. (b) 직접 또는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하여 (a)에서 규정한 국가 및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하여 그 국가에 있어서 방사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공가능한 정보를 신속하게(promptly) 제공한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제5조는 통보해야 할 정보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보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국가는 위 조약의 당사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오염발생국의 영역주권은 보다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통고해야 할 상대국이나 통보해야 할 시간적 제한에 관하여는 오염원국의 慷意가 발동할 여지가 매우 크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보를 받을 국가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고, 통보를 해야 할 시간적 제한에 대해서도 '즉시' 혹은 '신속하게' 라고만 규정하여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고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다자조약으로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Basel협약을 들 수 있는데, 위 협약도 마찬가지다.⁶⁴⁾ 위 협약에 의하면,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수입국에 대한 事前通告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위 협약은 더 나아가 사전통고 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事前通告同意' (PIC: prior informed consent)의 원칙이라 한다. 위 협약은 수출국으로 하여금 수입국과 경유국에 대하여 서면상으로 사전통고를 함과 아울러, 수입국과 경유국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수출국이 서면통고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부속서 5/가). 위 협약이 채용한 이러한 사전통고동의의 원칙은 국제법에 있어서 혁명적(revolutionary)원칙이라고

64) '有害廢棄物의 國家間 移動 및 그 處理의 統制에 관한 巴澤協約'(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Basel 1989)이 1994. 5. 29.자로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하게 되었다. 이 협약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국제법원칙에 대해서는, 指稿, '有害廢棄物의 國家間 移動에 관한 國際法原則', 國際法學會論叢, 第39卷 第2號(通卷 第76號), 1994.12. pp.107-124 참조.

평가되고 있으나,⁶⁵⁾ 문제는, 비록 위 협약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사전통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발도상국들은 그와 같은 통고에 따라 행동할 수 없다는데 있다.⁶⁶⁾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그 통고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원, 전문가, 또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통고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도상국측에 이전하지 아니한다면, 사전통고동의의 원칙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또한, 위 협약상의 통고의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권고적 효력 밖에 가지지 아니하는 soft law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⁶⁷⁾ 따라서, 위와 같이 단순한 통고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과연 국제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3. 協議의 의무

오늘날 국제환경법은 앞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혹은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잠재적) 환경손해를 야기한 국가에 대하여 (잠재적) 피해국과의協議(consultations)를 행할 것을 의무지우기도 한다. 이것을 協議의 義務(duty to consult)라고 부른다.⁶⁸⁾ 여기서 協議라 함은, '환경적 환경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는 피해국들의 이해관계의 고려가 그러한 계획의 최종적인 결정의 하나의 요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잠재적 피해국들과의 의견의 교환에 참여하는 과정'⁶⁹⁾을 의미한다. 피해국은 가해국과의 위와 같은 협의를 통하여 가해국의 제안된 혹은 기준의 환경위험활동의 내용을 토론하고 검토할 수 있게 되며, 피해국의 천연자원이나 환경에 대한 (잠재적) 역효과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

65) M.Bothe, op. cit., p.424.

66) D.P.Hackett, "An Assessment of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5 AM. U.J. INT'L L. & POL'Y(1990), p.318.

67) Ibid.

68) 일반적으로 협의의무는 통고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의 필연적 귀결(a necessary corollary)로 인정되기도 하나, 통고의무와 협의의무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A.L.Springer, op. cit., p.148).

69) F.Francioni, op. cit.. p.210.

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협의의 의무는 그 성질에 있어서, 대륙붕경제획정 혹은 배타적 어업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역에서의 어업권에 있어서 ICJ 가 인정하여 온 協商의 義務(the obligation to negotiate)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⁷⁰⁾ 즉, ICJ는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 판결에서, “이러한 (협상의) 의무는 모든 국제관계의 저변에 깔려있고, 더구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의 하나로서 유엔헌장 제33조에서 인정되는 원칙의 특별한 적용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는데,⁷¹⁾ 협의의 의무는 바로 이와 같은 협상의 의무와 유사한 것이다.

그런데, 일반국제법상 국가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협의의 의무를 가지는가. 이에 대해서 일부 국제법학자들은 일반적 협의의 의무를 기존의 (present) 혹은 형성중인(evolving) 국제법규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A.E.Utton, F.L.Kirgis, A.L.Levin).⁷²⁾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일반적인 협의의무라는 국제법규칙의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A.Kiss, A.L.Springer). 즉, 국가실행에 의하면 협의의 전제가 되는 조건, 협의의 당사자, 그리고 협의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규율하는 기준이 매우 다양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과연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는 협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⁷³⁾

위와 같은 협의의 의무는 특정한 환경손해 분야(예, 공유천연자원의 이용, 대기오염, 우주오염, 해양오염, 남극오염, 핵물질에 의한 오염 등)에 있어서는 국제조약,⁷⁴⁾ 정부간 혹은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결의 혹은

70) J.G.Lammers, op. cit., p.116. 한편, 유엔헌장 제33조 소정의 협상의 의무는 국제분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반면에, 사전협의의 마카니즘(협의의무)은 국제분쟁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F.Francioni, op. cit., p.210).

71)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ICJ Reports, 1969, para.86: 이러한 협상의 의무는 어업 관할권사건 판결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Fisheries Jurisdiction case(Merits), ICJ Reports, 1974, p.32).

72) A.E.Utton, "International Water Quality Law," in L.A.Teclaff et al.(eds.), op. cit., p.179; F.L.Kirgis, "Technological Challenge to the Shared Environment: United States Practice," 66 AJIL(1972), p.316; A.L.Levin, Protecting the Human Environment (NewYork: UNITAR, 1977), pp.49-51.

73) A.L.Springer, op. cit., p.149.

74) 협의의무를 인정한 다자조약과 이자조약의 예는 다음과 같다: 1960 Steckborn Convention on the

선언⁷⁵⁾을 통하여 인정되었다. 앞에서 검토한 The Lake Lanoux 사건에서 중재법원은, 비록 프랑스가 하천이용계획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이전에 스페인의 사전동의(prior consent)가 필요하다는 스페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으나, 적어도 프랑스는 그러한 하천이용계획을 수행하기에 앞서 스페인과 사전협의를 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즉, “하천수의 이용의 문제에 관하여 일반적인 이익을 가지는 2개의 국가는 (그 이용에 관하여) 협의 및 개별적 행동을 조화시킬 의무가 있다.”⁷⁶⁾ 그리고, 최근 1992년 리우선언에서도 원칙의 하나로서 위와 같은 협의의 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⁷⁷⁾ 즉, 리우선언 원칙 제19는, “모든 국가는 국경을 초월하여 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활동에 대하여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게 事前에 適時에 통보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초

Protection of Lake Constance against Pollution(Art. 1); 1964 Niamey Agreement concerning the River Niger Commission and the Navigation and Transport on the River Niger(Art. 12); 1968 African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Art. 15②, 14③); 1978 Agreement on Great Lakes Water Quality concluded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Art. 6①①, 10①); 1979 EC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Art. 5); 1980 Memorandum of Intent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Transboundary Air Pollution(Art. 3); 1981 Convention concluded between Hungary and the USSR concerning Water Economy Questions in Frontier Waters(Art. 3-5); 1985 ASEAN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Art. 19②, 20③⑥).

75) 협의의무를 인정한 정부간 혹은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결의, 선언 혹은 지침의 예는 다음과 같다:
Art. 6 of the 1961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Salzburg Resolution on the Use of International Non-Maritime Waters(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1974 OECD Council Recommendation C(74) 224 concerning Transfrontier Pollution (Annex, Title E)(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OECD); UNGA resolution No.3129(XXVIII, 1973) : UNGA resolution No.3281(XXXI, 1974)(Art. 3 of the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1977 OECD Council Recommendation C(77) 28(Final) concerning Implementation of a Regime of Equal Right of Access and Non-Discrimination in relation to Transfrontier Pollution (Annex, Title C)(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OECD); Art. 7④ of the 1979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Athens Resolution on Pollution of Rivers and Lakes and International Law(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Art. 8 of the 1980 Belgrade Articles on the Regulation of the Flow of Water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Art. 6 of the 1982 Montreal Rules on Water Pollution in an International Drainage Basin(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Art. 6 of the 1982 Montre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Transfrontier Pollution(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76) Lake Lanoux Arbitration(1957), 1957 ILR, p.133.

77) 그러나, 리우선언의 前身이라고 할 수 있는 1972년의 스黠훌름선언에서는, 당초 정부간 실무단체에 의해 준비된 초안에서는 협의의무를 인정하였다가, 본안에 가서는 협의의무가 삭제되어 인정되지 못하였다.

기단계에서 성실하게 이들 국가와 協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ILA의 환경보전위원회는 1982년 그 보고서를 통하여,⁷⁸⁾ 공유천연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국가간의 사전협의의 의무는 '이미 국제관습법의 원칙이 되었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공유천연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확립되어 온 협의의 의무는 대기, 우주, 해양, 남극과 같은 인류공동유산에 관한 모든 국가들의 형평적 이용에도 확대되었다.⁷⁹⁾ 따라서, 일반적인 국제환경법 분야에 있어서 일반적인 협의의 의무에 관한 국가관행은 조약법, 중재재판 및 국제기구의 결의 등의 차원에서 이미 '법적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⁸⁰⁾

그런데, 국제법상 일반적인 협의의 의무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첫째, 협의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환경손해의 정도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협의의무는, 통고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환경손해의 정도 보다는 크다고 판단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 고 말할 수 있다.⁸¹⁾ 왜냐하면, 어떠한 손해가 발생될 것으로 평가된다 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그리 중대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국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때로는 협의를 지연하고자 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염으로부터 국제수로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에 있어서 유럽심의회(the Council of Europe)가 설정한 협의절차에 의하면, 체약국중의 어느 한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모든 체약국들간의 자동적인 협의 절차의 진행이 개시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들이 그들중의 어느 한 국가가 그 오염에 대해 오로지 '과실있는' 기여를 한 것이라고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승인한다면, 그 국가는 협의에 응할 의무가 없다(제12조).⁸²⁾ 이것은 협의를 회피하기를 원하는 국가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려는

78)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Report of the Sixtieth Conference(Montreal, 1982), p.175.

79) F.Francioni, op. cit., pp.212-216.

80) Ibid. p.210.

81) A.L.Springer, op. cit., p.149.

82) Council of Europe, Consultative Assembly: Art.12 of the 1974 Draft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Against Pollution.

것이다.⁸³⁾

둘째, 협의의 당사자와 협의의 場(forum)에 관한 문제이다. 즉, 협의는 가해국과 피해국간의 쌍방적 혹은 二者的 형태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국제회의 등을 통한 多者적 형태를 가질 것인가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협의의 당사자는 가해국(혹은 정보제공국)과 피해국(혹은 정보수령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협의의 의무를 인정한 대표적인 다자조약으로, 방사능누출사고와 관련한 '핵사고의 早期通告에 관한 條約'⁸⁴⁾을 들 수 있는데, 위 조약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제2조 (b)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체약국은, 영향을 받은 체약국이 자국에 있어서 방사능의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추가적 정보의 제공 또는 협의를 구하는 요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신속하게 응해야 한다." 여기서 협의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국가는 실제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국가'(an affected State Party)이며,⁸⁵⁾ 반대로 정보를 제공한 국가는 협의에 응할 의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협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원칙적으로 쌍방의 외교기관간 교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국의 수가 많다거나 혹은 피해의 성질에 따라서는 다른 형태의 협의가 요청된다. 예컨대, 여러 국가들이 공유하는 하천을 규율하는 협정들은 때로는 그 협정에 의해 설치된 국제기구(예, the River Niger Commission) 혹은 지역적 협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특별위원회(예, Lake Constance Agreement)의 체제내에서의 협의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주조약에 있어서는 단순히 '적절한 국제적 협의'(appropriate international consultations)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더 나아가 모든 우주활동에 관한 정보는 '공적 및 국제적 과학기구 뿐만 아니라 유엔사무총장'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11조), 쌍방적 협의 보다는 보다 넓은 국제적

83) A.L.Springer, op. cit., p.149.

84) 1986 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IAEA).

85) 원래 위 조약의 초안(제3조)에 의하면, "협의는, 요청에 기하여, 제1조 제1항 (a)호(조약 제2조 (a) 항에 해당)에서 명시하고 있는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모든 국가와 제1조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는 국가간에, 협의를 요청하는 국가에 있어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早期에 행해지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초안에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모든 국가'라는 표현은, 본조약에서는 '영향을 받은 국가'로 후퇴하였다.

인場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제안한 환경영향평가체제에 의하면, 지구전체(global common area)에 미치게 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의 경우에는 UNEP와의 협의를 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⁸⁶⁾ 또한, 제기된 문제가 매우技術的인 경우에는 외교관들간의 협의가 아니라, 당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간의 협의가 요망된다. 예컨대, 1978년 미국과 멕시코는 미국의 환경보호국과 멕시코의 환경개선국의 직원들간의 정기적인 협의절차⁸⁷⁾를 마련한 바 있다.⁸⁸⁾

셋째, 협의과정의 시간적 제한에 관한 문제이다. 협의과정을 통하여 문제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협의의 의무는 합의에 도달시킬 의무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능한 한 협의과정을 거칠 것을 의무지우는데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협의 혹은 협상은 단순한 형식적인 선행조건이 아니라 의의있는 협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그것은 협상에 성실하게(in good faith) 임할 의무를 지닌 것이지 합의 자체에 도달할 의무까지 당사국에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⁸⁹⁾ 만약 합리적인 기간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다면 피해국으로부터의 사후의 국제청구의 감수를 전제로 하여, 그 활동을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⁹⁰⁾ 그러나, 여기서 합리적인 기간이란 과연 얼마 정도의 시간의 경과를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불분명하고, 그 판단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위에서 본 '핵사고의 早期通告에 관한條約'에 의하면, 협의에 응할 시간적 제약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신속하게'(promptly, as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라고 규정하여

86) Art. 2 of the U.S.: Draft Treaty on Internatiopnal Environmental Assessments, Senate resolution 49, 21 July 1978, in 17 ILM(1978), p.1083.

87)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Subsecretariat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Mexico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f the United States for Cooperation on Environmental Programs and Transboundary Problems, 6 June 1978, 17 ILM(1978), p.1057.

88) A.L.Springer, op. cit., pp.149-150.

89) 権文相, "海洋境界劃定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89, p.127.

90) A.L.Springer, op. cit., p.150.

(제6조),⁹¹⁾ 그 내용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협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명시적으로 한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미국이 제안한 환경영향평가협정에 의하면, 환경에 영향을 미칠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는, UNEP 혹은 잠재적 피해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계획을 실행하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후 90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다.⁹²⁾

결국 위와 같은 일련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인 협의의무를 국제법규칙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반적인 협의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국제책임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事前承認을 받을 의무

일반적으로 물질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활동 혹은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을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는가. 국가(피해국)는 자기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다른 국가(가해국)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거부권'(veto)을 가진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국가(가해국)의 주권적 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⁹³⁾ 따라서, 일반국제법상 원칙으로는 국가는 그와 같은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⁹⁴⁾ 즉, 이러한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는, The Lake Lanoux 중재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⁹⁵⁾ 아직까지 일반국제법(국제관습법)상의 원칙으로 인정되지

91) 원래 위 조약의 초안(제3조)에서는 '조기에 협의를 행한다'라고 표현하였으나, 본조약에서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의에 응한다'로 후퇴하였다.

92) A.L.Springer, op. cit., p.150.

93) A.L.Springer, op. cit., p.151.

94) A.L.Springer, op. cit., p.150; R.Bilder,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the Field of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Environment," in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Recueil des Cours 1975, 3vols, p.180; G.Gaja, "River Pollution in International Law," Recueil des Cours 1973, p.377.

95) The Lake Lanoux case에 있어서 중재법정은, 프랑스는 스페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스페인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스페인의 주장은 분쟁에 대한 국가관할권행

못하고 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가간에 공유자원의 사용에 있어서는 기껏해야 '사전통고협의'(prior informed consultation)가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⁹⁶⁾ 따라서, 사전통고동의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적인 국가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國際水路의 규제, 폐기물무역의 규제 등과 같은 특정한 환경손해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조약,⁹⁷⁾ 국제기구의 결의⁹⁸⁾ 등을 통하여 국제법상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 즉 '事前通告同意'(PIC)의 원칙이 인정된 예가 있다. 예컨대, 1905년 노르웨이와 스웨덴 간에 체결된 水路協約⁹⁹⁾에 의하면,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제1조에서 규정한 작업(works)은, 그것이 다른 국가의 水域(waters)에 영향을 미치고, 항해 혹은 뗏목사용을 위한 水路의 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거나 큰 지역의 수역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양국 중의 어느 한 쪽에서 다른 국가의 동의(consent)가 없는 한 작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규정하였다.¹⁰⁰⁾ 이러한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는 20세기 초경 여러 국제조약에서 인정되었으나,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국가주권의 존중이라는 국제법원칙에 따라 오히려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 지구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체의식 내지 연대의식의 확산

사의 일반적 정치상태를 의미하거나, 그 성질이 무엇이든 모든 분쟁을 제3자적 권위에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판행은 위 양자 혹은 그 어느 한쪽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아니한다.(Lake Lanoux Arbitration(1957), 53 AJIL(1959), p.167.

96) P.W.Birnie & A.E.Boyle, op. cit., pp.315-316, 327-329, 336.

97)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를 인정한 다자조약과 이자조약의 예는 다음과 같다: 1892 Convention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Fisheries in Boundary Waters between Luxemburg and Prussia(Art. 10); 1960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Lake Constance against Pollution(Art. 1); 1967 Treaty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Water Management Questions relating to Frontier Waters between Austria and Czechoslovakia(Art. 3).

98)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를 인정한 정부간 혹은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결의, 선언 및 지침의 예는 다음과 같다: 1911 International Regulations regarding the Use of International Courses for Purposes Other Than Navigation(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1933 Declaration on the Industrial and Agricultural Uses of International Rivers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merican States).

99) Art. 2 of the 1905 Convention concerning Common Waterways between Norway and Sweden.

100) 위 조약규정에 의하면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국제수로의 이용에 있어서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다 는 것이 마치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해석은 그 당시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으로 지구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가의 활동을 점차 규제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가 확산되는 경향에 있다. 예컨대, 핵발전소, 유조선 및 지하핵실험 등은, 비록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한다면 체르노빌원전사고와 같이 지구환경 및 인류자체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할 것이므로, 다른 국가 혹은 국제기구의 사전승인의 필요성이 요청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善隣(good neighborliness)의 원칙은 통상적인 경우 보다도 좀 더 엄격한 예방적 의무를 요구하게 된다.¹⁰¹⁾

사전통고동의 원칙에 입각한 최근의 국제문서로는, 1984년의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OECD 위원회 결정 및 권고'¹⁰²⁾와 같은 해 'EC域內에 있어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감독과 통제에 관한 EC 위원회 명령'¹⁰³⁾, 그리고 1987년의 Cairo지침 등이 있다. 또한, 미국은 1986년 캐나다 및 멕시코와 사이에 각 쌍무협정을 통하여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를 행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전통고동의의 원칙을 채용하였다.¹⁰⁴⁾ 미국은 이미 1984년 유해폐기물의 수출에 관한 사전통고동의의 원칙을 채용한 국내입법을 한 바 있다.¹⁰⁵⁾ 事前通告同意의 원칙을 인정한 대표적인 다자조약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Basel 협약을 들 수 있다.¹⁰⁶⁾ 위 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수출국은 수입국에게 사전통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위 협약은 수출국으로 하여금 수

101) A.L.Springer, *op. cit.*, pp.151-152.

102) OECD Council Decision and Recommendation on Transfrontier Movements of Hazardous Waste, OECD Doc. C(83)180 (Feb. 1, 1984), reprinted in 23 ILM 214 (1984).

103) Council Directive 84/631 of 6 December 1984 on the Supervision and Control within the European Community of the Transfrontier Shipment of Hazardous Wastes, 1984 O.J. (L 326) 31.

104) Agreement of Cooperation Regarding the Transboundary Ship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Hazardous Substances, Nov. 12, 1986, U.S.-Mex., TIAS No. 11,269; Agreement Concerning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Oct. 28, 1986, U.S.-Can., TIAS No. 11,099.

105) 42 U.S.C. 6938 (a)(1)(B) (Supp. II, 1984); 40 C.F.R. 262.52(b) (1988).

106) 括稿, 앞의 논문, pp.116-118.

입국과 경유국에 대하여 서면상으로 사전통고를 함과 아울러, 수입국과 경유국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수출국이 서면통고를 함께 있어서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부속서 5/가).

이상과 같이 사전승인 혹은 동의의 원칙은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해국이 피해국의 사전승인 혹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위험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해국과 피해국간의 조약상 그러한 사전승인 혹은 동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약규정의 위반은 국제책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러한 조약규정이 골격조약 내지 soft law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국제책임이 성립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5. 援助의 의무

일반적으로 국제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국가도 환경의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1992년 리우선언 원칙 제18은, “다른 나라의 환경에 급속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떠한 자연재해나 기타의 긴급사태는 이들 나라에게 즉각 통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입은 국가를 원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국제사회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Every effort shall be mad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는 의미가 바로 국가에게 원조의무를 부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일반국제법상으로는 원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을 야기한 원천이나 그로 인하여 누가 피해자가 될 것인가를 불문하고, 모든 당사국이 환경오염의 위험에 대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여러 조약들이 있다.¹⁰⁷⁾ 예컨대, 1971

107) A.L.Springer, op. cit., p.144.

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연안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호원조 체계에 관한 조약¹⁰⁸⁾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조약 제3조에 의하면, 일방 당사자는 다른 체약국들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비록 이러한 요청이 그 유출사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국가에게로 향하여져 있는 것이기는 하나, 모든 당사국은 ---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해양법협약 제199조에 의하면, “(해양오염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내의 국가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가능한 한 오염의 효과를 제거하고 손해를 방지 또는 극소화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986년 IAEA총회는 핵사고의 방지와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의 援助에 관한 협약」¹⁰⁹⁾을 채택한 바 있는데, 위 협약은 일정한 원조요청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즉, 위 협약에 의하면, “체약국은, 핵사고 또는 방사선 긴급사태에 있어서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직접 혹은 이 기구(IAEA)를 통하여 다른 체약국, 이 기구 혹은 적당한 경우에는 다른 정부 간 국제기구에 대하여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2조 제1항)고 규정하여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위 협약은 나아가, “원조의 요청을 받은 체약국은 신속하게 요청된 원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할 수 있는 원조의 범위 및 조건을 결정하여, 직접 또는 이 기구를 통하여 요청체약국에게 통보한다”(제2조 제3항), 그리고 “체약국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핵사고 또는 방사선 긴급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체약국에 대한 원조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가능하게 될 수 있는 전문가와 기자재를, 당해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 특히 재정적 조건과 더불어 명시하여 이 기구에 통보한다”(제2조 제4항)고 규정하여 원조요청에 대한 일정한 원조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협약은 일방 체약국의 원조요청에 대하여 그 요청

108)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Agreement concerning Cooperative Measures to Deal with Pollution of the Sea by Oil, September 16, 1971.

109) 1986 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IAEA): 이 원조협약은 핵사고 또는 방사능누출과 같은 긴급사태의 발생시 피해의 최소화와 생명, 재산 및 환경의 보호를 위해 신속한 援助提供을 위한 제도를 창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을 받은 국가가 반드시 원조를 제공해야 할 의무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원조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국제조약상 일정한 원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원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국제책임을 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IV. 마지막에

이상에서 국제환경법규범 중에서 국가가 지켜야 할 국가의무, 즉 환경손해방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오늘날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협력의무는, 환경영향평가의 의무, 통고의 의무, 협의의 의무,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 및 원조의 의무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¹¹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의무가 과연 국제법상 국가를 강제할 수 있는 규범으로 확립된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그와 같은 의무를 국가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곧바로 국제의무위반이 되고 나아가 그것이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여 국제책임의 하나의 구성요건을 성립시키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국가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협력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일반국제법원칙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협력의무의 위반만으로 바로 국제책임을 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협력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국제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그리고 국제법상 인

110) 이러한 의무들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환경손해방지의무, 즉 협력의 의무가 국제조약, 국제판습, 국제기구의 결의 등을 통하여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규범으로 점차 인정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협력의무의 효과적인 작용을 약화시키는 여러가지 결함과 한계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즉, ① 빈번한 회피조항(escape clause)의 원용이다. ② 협력의 결착적 수단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환경위험 혹은 손해의 규모에 관한 한계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혹은 제3자적인 매카니즘의 부족이다. ③ 외국에 의해 그 발생이 야기되거나 기억된 환경긴급사태 혹은 위기에 있어서 원조를 제공할 일반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④ 강제적 규칙의 부존재 등을 들 수 있다(F. Francioni, op. cit., pp.219-221). 위와 같은 일련의 결함과 한계는 모처럼 국제조약 등을 통하여 국제법규칙으로 인정되어 온 협력의무의 실효성을半減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되는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협력의무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의무 중에서 적어도 환경영향평가의무 및 통고의무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위반은 「상당한 주의」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국제책임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Trail Smelter 사건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적어도 국경을 인접하는 2국간에 있어서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중대한」 환경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는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손해방지의무 위반은 배상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와 같은 환경오염 방지의무가 長距離越境汚染(long-range transboundary pollution)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이 없지 아니하나 이것도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Corfu Channel 사건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는 그 영역내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타국에 대해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早期에 通告할 의무가 있음은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The Lake Lanoux 중재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인접국의 물 이용에 의하여 영향을 입게 된 국가는 그 인접국에 대하여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사고시에도 조기통보의무가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환경오염분야에 있어서 다자조약 혹은 쌍무조약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협의의 의무,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 원조의 의무 등은, 그것이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상의 의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위반만으로는 바로 당해 국가가 국제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위와 같은 의무도 일반국제법원칙으로 확립되고, 나아가 그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위와 같은 의무가 그렇게 발전한다면, 그러한 의무위반은 곧 국제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